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,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(안 제7조 개정)

- 시험설비,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
- 안전인증기관 참여에 따른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·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

나.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(안 제18조 개정)

-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, 행정처분, 안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호 중 “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”을 “법인 또는 단체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·고가(高價)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임차·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

제18조제1항제28호 중 “제11조제3호”를 “제7조제3호 및 제11조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, 제4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1호로 한다.

2.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

4.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

7.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

8.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

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) 법 제4조제2항에서 “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	제7조(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<u>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</u> 일 것	1. ----- <u>법인 또는 단체일</u>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< <u>단서 신설</u> 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·고가(高價)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임차·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</u>
4. ~ 6.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
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
위임한다.

1. ~ 27. (생략)

28. 제11조제3호 단서에 따른
특수·고가 시험설비의 고시

29. ~ 33. (생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
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업무를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
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
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(생략)

<신설>

3.·4. (생략)

<신설>

제18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

-----.

1. ~ 27. (현행과 같음)

28. 제7조제3호 및 제11조제3호

29. ~ 3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
고에 관한 업무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4.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
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
한 업무

5.·6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
같음)

7.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
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

<u><신 설></u> 5. (생 략)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.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·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1.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.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3.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.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5. (생 략)	<u>등에 관한 업무</u> 8.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9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1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	
연 락 처	(043) 870 - 5441